

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07.01.

제1조(명 칭)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라 한다.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
제2조(목 적) 위원회는 우리대학교 신입입생 입학전형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하고 타당한 입학업무 수행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 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.
- ④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간사는 회의록 기재 및 기타 업무상 실무를 담당한다.
-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동안으로 한다.

제4조(기 능) 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①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 부정 방지 대책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
- ②입학전형관리에 관한 자체 감사
- ③입학전형관리의 공정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내부 통제
- ④입학전형관리 업무상 문제점 발생시 이에 따른 시정 및 보완 조치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.

제6조(회 의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전문대학 선발 기본 사항의 학생선발 준수사항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한 활동으로써 학칙 제14조항에 의거하여 위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